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청본관 3층) 담당 김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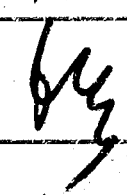
문서번호 법무 11010 - 216

시행일자 1996. 4. 24.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 제 제 장			
기안	김철수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은행제한차량단속규정 발령

1. 서울특별시은행제한차량단속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혼령안 각 1부. 끝.

(제2안)

혼령제 837 호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혼령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은행제한차량단속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혼령 제 837 호.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참조 총무부장

제목 혼령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은행제한차량단속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4. 30

첨부 서울특별시 혼령 제 837 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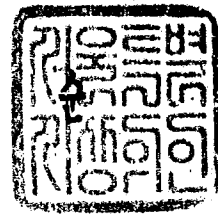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조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안

1. 制定理由

우리시 주요교량과 도로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운행제한차량, 운행제한제외차량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나. 최초 중량측정점문소에서 운행차량중량측정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적이 아닌 차량을 반복측정하는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 요인을 제거함(안 제6조)
- 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책임자 및 책임자 각각의 임무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 총괄단속책임자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 직접단속책임자 : 건설관리사업소장
 - 단속반책임자 : 반 장
- 라. 단속방법을 고정단속, 기동단속, 전진초소운영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11조)
- 마. 단속반 편성 및 근무요령 등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8조)
- 바.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공무원이 위반차량 적발시 처리하여야할 사항 및 그 절차, 요령 등을 정함(안 제19조)

3. 參考事項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나. 합 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 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행제한차량"이라 함은 영 제28조의3제2항에 근거하여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및 건설 기계를 말한다.
2. "도로관리자"라 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도로관리원"이라 함은 도로법 제54조의5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본규정에 따라 도로상을 운행하는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단속반장 및 반원을 통틀어 말하며 도로관리자가 임명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4. "축중"이라 함은 차량 등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의 합을 말한다.
5. "총중량"이라 함은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수직으로 지면에 전달되는 차량 등의 총중량으로서 차체의 무게와 승차 인원의 무게와 적재 화물의 무게의 합을 말하며, 축중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로관리청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중 법 제54조 및 영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이 제한된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운행제한차량) 운행제한차량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차량(트레일러연결차와 세미트레일러연결차를 포함한다) 및 건설기계로 한다.

1.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의 제원이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4조(설계기준 차량)의 자동차 종별제원중 다음 값을 초과하는 차량

(단위 : m)

길 이	폭	높 이
19.0	2.5	4.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으로서 법 제54조 및 영 제28조의3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한하는 차량

제5조(운행제한 예외) 법 제5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이하 "허가차량"이라 한다)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다만, 운행경로상에서의 도로관리원은 허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운행차량 증량측정표 발급) ① 도로관리자는 운행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운행경로상의 모든 과적검문소에서 증량을 반복 측정함에 따른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운전자가 요구하는 경우 최초 증량측정 과적검문소에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운행차량 증량측정표"를 발급하고 발급현황을 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타 과적검문소에서는 차량운전자가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운행차량 증량측정표"를 제시할 경우 증량측정후 화물을 추가 적재한 흔적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측정표상의 증량만을 확인하고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단속책임자) 단속책임자는 총괄적인 단속책임자와 직접적인 단속책임자를 따로 정하며 총괄적인 단속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로 한다)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직접적인 단속책임자(이하 "직접책임자"로 한다)는 건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반별 단속책임자는 반장이 된다.

제8조(단속책임자의 임무) 단속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장의 임무

- 가.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나. 본부소속 간부직의 순찰실시(월1회 이상) 명령 및 각종 기록유지
- 다. 비위단속을 위한 암행기동 감찰실시(분기1회 이상)
- 라. 자질향상 교육 실시(연2회 이상)
- 마. 특별단속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

2. 소장의 임무

- 가.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나. 단속계획 및 순찰실시계획 수립, 순찰 실시(일1회 이상)

- 다. 도로관리원 임용(일용직) 및 관리
- 라. 단속반 편성·운영(반원상호간 및 검문소간 순환보직 포함)
- 마. 직무교육 실시 (월1회 이상)
- 바. 위반차량 수사 및 검찰송치
- 사. 관내 운수업체 및 위반차량 유발 가능업체에 대한 홍보 실시
- 아. 축중계의 계측오차 확인(주1회 이상) 및 유지관리, 고장시 지체없이 수리
- 자. 도로관리원별 근무 정위치 배정
- 차. 도로관리원의 후생복지 상태 점검 및 지원

3. 반장의 임무

- 가. 소장의 지시에 따른 소속반원의 지휘·통솔
- 나. 반원의 정위치근무 확인, 제복착용 여부(야간은 X밴드착용 포함)등 근무상태 감독·보고
- 다. 운행제한 위반여부 판정 및 위반차량(도주차량 포함) 즉시 보고
- 라.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등의 통과시 허가증 및 운행허가 증량 확인
- 마. 단속장비 및 각종 안내표지등의 정비정돈
- 바.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 및 적치물 제거, 단속검문소 청결유지
- 사. 축중계의 조작요령과 예방점검요령 숙지 및 반원에게 지도

제9조(도로관리원의 임무)

1. 과적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을 검사장에 진입유도하고 검사가 끝난 차량을 주행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토록 하는 일
2. 축중계를 정확히 조작·계측하고 과적여부를 운전원에게 확인시키는 일
3. 위반차량(도주차량 포함)에 대한 사진촬영등 기록유지
4. 운행제한 위반 판정이 났을 때 운전원에게 자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받는 일

제10조(단속계획 수립·시행) ①소장은 매월말 이전에 다음달의 단속지점별 단속일시·단속반의 구성·단속방법 등을 기재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속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계획을 조정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속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고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단속방법) ①단속방법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고정단속, 장소를 수시이동하면서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기동단속과 교량위에서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는 전

진초소 운영으로 구분한다.

② 단속은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경일등에는 도로관리원을 축소 조정하여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전진초소 운영)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접 교량으로 진입하여 차량의 중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장소는 일정한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교량 위 본선구간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단속준비) ① 단속장소는 도로의 교차·접속·굴곡 또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으로 단속이 부적합하거나 교통에 혼잡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측정지면은 견고하고 평탄하여야 한다.

② 검문소 주변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단속대상차량을 안전하게 유도 진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③ 야간단속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투광기등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단속장비 점검) 측정계(휴대용)는 계량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단속반 편성·운영) ① 직접책임자는 운행제한차량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단속반의 편성은 단속초소 1개소당 3개반 15명(3교대×5명)으로 편성하고, 기동 단속반은 3개반 15명(3교대×5명)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6조(도로관리원의 임용 및 임명) ① 도로관리원(일용직)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준하되, 신체건강상태 및 도로관리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접책임자는 도로관리원임을 표시하는 제복·제모·원장 및 명찰을 착용시키고 그 명단과 근무위치 등을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근무요령) ① 근무시간은 1일 3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및 위반차량적발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근무조별로 작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중에는 반드시 제복·제모·원장 및 명찰을 착용하고 반원 5명중 4명은 반드시 검문소 밖에서 깃발(야간에는 전자봉)을 사용하여 차량을 진입 유도하고 검문하여야 한다.

③ 야간단속시 도로관리원은 야광X밴드를 착용하고 깃발 대신 전자봉으로 신호하여야 하며 검문소에는 등화장치를 밝게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직접책임자는 반장·반원등이 질병 기타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리 대리근무자를 임명하거나 잔여반원만으로 업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직접책임자는 업무형편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반원별 임무) 직접책임자는 조별 반장 및 반원별로 다음 각호의 임무를 분담시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반장은 반원(갑을병정)을 필요한 지점에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토록 하고 유도된 차량의 계측과정과 계측결과를 확인한 후 위반차량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알려야 한다. "차량번호 0000호는 단속기준 총중량 00톤이 초과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과 송장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동 고발조치됩니다. 계측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차주나 화주가 과적행위를 강요하였다면 그에 대한 진술과 차주·화주의 인적사항(상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진술하여 주십시오."
2. 반원(갑)은 축중계를 정확히 조작계측하고 과적여부를 운전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3. 반원(을)은 위반차량 운전원으로부터 면허증과 증기검사증등 필요한 서류를 제시받아 자인서(별표 5)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전원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토록 한다.
4. 반원(병)은 계측장소 100~200m 전방에서 과적으로 보이는 차량을 깃발(주간) 또는 전자봉(야간), 호루라기 등으로 신호하여 계측장소로 유도 진입시키고 검사완료 후 차량의 주행선 진입을 도와준다.
5. 반원(정)은 기록 및 상황보고를 위하여 초소안에서 근무한다.

제19조(사법처리) ① 직접책임자는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등에 대하여는 법 제83조(벌칙) 및 제86조(양벌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직접수사·송치등 사법처리하고, 또한 사업용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반차량 적발시 반장은 지체없이 직접책임자에게 적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과적운전원의 수사과정에서 화주를 포함한 타인이 과적을 요구·지시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과적을 요구·지시한 자에 대하여도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 ④ 운전원이 수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부인하거나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의 증거제시요구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증거자료를 확보·보관하여야 한다.
 1. 위반사항을 자인하는 운전자의 서명날인(무인도 가함)된 자인서
 2. 운전자가 불응하거나 도주운행시에는 반장과 반원이 연명으로 위반임을 인정하는 서명날인한 확인서

3. 운전자 불응시 화주(그 대리인 포함) 또는 차주가 동승하였을 경우에는 화주 또는 차주가 자인하는 서명날인된 자인서
 4.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사진등을 촬영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화주의 과적행위 강요가 명백한 경우 운전자의 진술서등 증빙자료
 6. 차량 중량 측정표
 7. 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및 송장 사본
 8. 기타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진등 자료
- ⑤공업단지, 골재채취장등의 입구에서 적발된 출고지가 명확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인 경우 즉시 회차하여 감량조정이 가능할 시에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회차조치할 수 있으며 단속반장은 반드시 감량전후의 관계사진을 도로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홍보) ①도로관리자는 운행제한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신문, 라디오, TV, 반상회보, 안내문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과적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수업체 및 과적유발가능업체에 대하여 운행제한위반 운송행위 및 비위행위를 자제하여 주도록 홍보하거나 공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및 기록유지) 직접책임자는 다음 제1호 내지 제2호의 현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실적은 서식에 따라 총괄책임자에게 매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속현황(별지 제6호 서식)
2. 단속실적보고(별지 제7호 서식)

제22조(기타)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을 준용한다.
- ③(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도로법 제53조에 의하여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된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경과조치) 종전의 과적차량 단속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운행차량중량측정표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일시로부터 ()시간	
운행차량		중량측정결과		
차종		측정일시 : 199 . . . 시 분		
등록번호		측정장소 :		
차량운전자성명		구분	측정결과	재확인결과
화물의종류 ·도착예정지		측 하 중 (톤)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총중량(톤)		
※특기사항 본 중량측정표는 유효기간내에 한함		재확인 측정일시 : 199 . . . 시 분 측정장소 : 재확인 측정자 소속 : 성명 : (인)		

도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중량측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99 . . .

도로관리청명 :

단속책임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운행차량중량측정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일	급 시	차 종	차량등록번호	운 전 자		중 량 측 정 결 과 (톤)						발급자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총중량

담	당	계	장	과	장

근 무 일 지

1. 일 시 : 199 년 월 일 ~ 월 일

2. 위 치 :

3. 근 무 자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서 명	비 고

4. 일 기 : 최고 : °C. 최저 : °C

5. 축중계 작동상태 :

6. 위반차량 적발현황(뒷면 양식에 기록)

7.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위 반 차 량 적 발 현 황

적 발 일 시	적 발 장 소	차 량 구 분		위 반 사 항		화 물 종 류	화 물 행 선 지		운 전 자			차 주		화 주
		차 종	차 량 번 호	축 중	총 중 량		출 발	도 착	성 명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주 소	

※ 작성요령

1. 적 발 현 황 : 근무일지 뒷면에 인쇄하여 기록유지
2. 적 발 장 소 : 시·구·동까지 기입
3. 차 종 : 11톤카고트럭, 15톤건설기계, 11톤곡물수송차 등으로 구분기입
4. 위 반 사 항 : 축중, 총중량 등의 초과 위반사항 기입
5. 화 물 종 류 : 양곡, 골재, 철근, 시멘트 등으로 구분기입
6. 화 물 행 선 지 : 화물의 처음 출발지, 마지막 도착지 기입
7. 화 주 : 화물의 주인을 조사 기입

[별지 제4호 서식]

순찰지도기록부

년월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지시사항	비고

자 인 서

1. 차량 소유자 : 가) 주 소
나) 성 명

2. 차량 번호 : 호

3. 운 전 자 : 가) 주 소
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다) 면허종류
라) 면허번호

4. 적 발 장 소 :

5. 위 반 내 용 : 본인은 차량번호 호에 톨 과적
(총중량 톤 초과등)하여 운행하였음을 인정합니다.

199 년 월 일

자인자 :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서울특별시 건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운행제한차량 단속현황

(단위 : 대)

월	일	계	측	수사송치	고	발	도주고발
	계						

[별지 제7호 서식]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실적보고

초소별	단속 지점	①단속내역			위반차량내역(고발 및 수사)					⑤기동단속 실적				⑥ 도주 고발 (대)	단속초소 순찰실적
		②검차	③고발	④수사	2축	3축	4축	5축	6축	회수	②검차	③고발	④수사		
합계															○순찰 및 교육실적 - 암행기동감찰 회/명 (암행감찰인원) - 간부직 순찰 회/명 (순찰인원) - 교육실시 회/명 (참석인원) ○암행감찰 및 순찰시 지적사항 - 암행감찰 : - 간부직 순찰 : ○교육내용 : ○기타사항 : ※본항이 부족한 경우 별도의 여백을 사용

- ※① 단속내역은 기동단속 실적(⑤)을 포함(합산) 기재
- ② 검차 = ③고발 + ④수사 + 통과대수
- ⑥ 도주고발 = 검차실시 결과로 고발(③)한 경우와는 별도로 기재